

2015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(안)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·공시합니다.

2016. 4. 29.

성 북 구 청 장

1. 2015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

가. 공시기준일 : 2015년 1월 1일

나. 개별주택수 : 1호

다. 공시사항 : 개별주택의 지번, 면적, 가격(개별 내용 생략)

라.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: 성북구청 세무1과

2.. 이의신청 방법

개별주택가격 정정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정 결정·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(세무1과)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3. 시행일

이 공시는 해당년도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